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다만,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등 및 별표 9 제2호가목1)·2)·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을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해당하거나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출한 사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곡류 또는 두류로서”를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 중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로 한다.

별표 10 제4호나목 중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로,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를 “포장장소”로 하고, 같은 호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별표 13 II 제3호다목부터 제3호마목까지를 각각 제3호라목부터 제3호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II에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1)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또는 용 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3)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 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1호서식 뒤쪽, 제25호서식 제1쪽 및 제2쪽, 제26호서식 앞쪽,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업정보 Business Information	영업의 종류 Type of business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or food additives ☐ 기구, 용기·포장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 농산물 포장(☐ 농장, ☐ 농장혼합시설, ☐ 집하장)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Farm, Farm mixed facility, Collection Point)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unctional health foods ☐ 수산물 제조·가공 (☐ 수산물 제조·가공, ☐ 선박, ☐ 양식장) (Manufacturing/processing fishery products, Vessels, Aquaculture)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pplies to the type of food above, If applicable	☐ 적용 안함 No ☐ 적용 Yes ※ 적용하면 그 시스템을 선택 If "Yes", check as applicable or specify the system ☐ HACCP ☐ ISO 22000 ☐ 기타 Other () ※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Whether to be certified by a certification body ☐ 없음 No ☐ 있음 Yes ※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제공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 인증명 Title of certification () ■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 인증일 Certification date () ■ 만료일 Expiration date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 상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accurate.

※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 If "Importer", check the below additionally.

☐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2)·(6)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and Article 2(1)·(3)·(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I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식품안전정보원의 장 귀하

To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Republic of Korea

첨부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증빙 서류 - 해당서류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국가 증빙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Documents issued by the exporting country's competent authority certifying that the foreign food facility is authorized, registered or declared according to the country'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food products - Such documents must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oreign food facility. However, when such documents cannot be submitted,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of a Foreign Food Facility (Form 1-2) may be used instead. * When submitting translated version of such documents, they should be notarized.
--	--

유의사항 Not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변경·갱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If it is determined that a foreign food facility made registration or alteration or renewed its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ts registration will be revoked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처리절차 Procedure Note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라.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수입인지) 영업자 성명 변경: 수수료 면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영업장의 면적(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 품구분	1: 농·임산물 [] 2: 수산물 [] 3: 축산물 [] 4: 가공식품 [] 5: 식품첨가물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US\$)
총항수	항번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세번부호 (HSK 번호)		용도	품목제조보고번호(자사제조용 및 외화확득용에 한함)		
			위생증명서 발급번호(해당 축,수산물에 한함)		
			원재료명·재질, 제조·가공방법,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용: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가공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제품상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식품[], 분말제품[], 액상제품[],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 냉동식품(가열하지 않고 섭취)[], 살균제품[], 멸균제품[], 건조제품[], 유통유처리 제품[], 캡슐제품[], 정제제품[],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해당 없음[]		
이력번호(수입신고기 및 수입폐지기간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의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원료조사[], 해당 없음[]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아니오[]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고령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경도조절제품[] 점도조절 제품[] 해당없음[]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아니오[]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아니오[]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처리상황(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illegible]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B: 사전신고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식품 등 [] 2: 식품첨가물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4: 축산물 []	처리기간	식품등: 서류검사 2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정밀검사 18일																

수하인 (수입화주)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신고인 (구매대행 영업자)	성명	상호										영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	--	--	--	--	--	--	--	--	--	--	--	--	--	--	--	--	--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검사(반입) 장소											(☎ - -)							
반입일	년 월 일										선하증권(B/L)번호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항번호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단위: EA)	제품 URL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처리부서	
연락처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상 호 주 소	대표자	
제 조 가 공 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수 입 신 고 대 행 업 자	성 명 주 소		
제 품 명		한글명	
총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검사종류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 (B/L)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HSK번호		유형 또는 품목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변형식품표시	표시함[] 표시하지 않음[] 해당 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예[] 아니오[]		
이력번호 (수입신고기간 해당함)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			

제 품 내 역

NO.	제 품 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순중량 (단위 : kg)	과세가격 (단위 : US\$)	유통기한만료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생략)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용도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식품등이 별표 9 제2호가목5) 또는 같은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현행과 같
음)

3. -----

시 험 .

검사성적서[용도변경]-----

른 <u>곡류 또는 두류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u>) <u><신 설></u> 3. (생 략) ② ~ ④ (생 략)	-- <u>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u> ----- -- 2의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u>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u> <u>공</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2